

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 비공개 세부 기준

○ 관련근거 :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3항

·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·공개

* 비공개 세부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 및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, 비공개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없음

담당부서	세부업무	비공개 해당 업무	관련근거	비고
운영지원과	보안업무에 관한 사항	○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- 보안업무규정 제5조 -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, 심사분석 및 비밀문서, 비밀기록물, 비밀취급인가자 명단, 암호자재 등 보안업무관련 정보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	
운영지원과	소송업무에 관한 사항	○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- 형사소송법 제47조 관련 -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정보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	
운영지원과	소속 공무원의 재산 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	○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- 공직자윤리법 제10조 -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정보. 다만,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	
운영지원과	인사업무(징계)에 관한 사항	○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- 공무원징계령 제20조 -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정보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	
공통부서	통계업무에 관한 사항	○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- 통계법 제33조 -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	
운영지원과	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·종합 및 조정	○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안전보장, 국방, 통일,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" -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 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총무계획 등의 수립 -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비상사태를 대비한 동원자원관리, 전시대비 정부비축 등에 관한 내용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	
운영지원과	민방위 및 예비군지원관리	○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안전보장, 국방, 통일,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" - 직장예비군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정보 - 민방위대의 관리에 대한 정보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	
운영지원과	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	○ 국토교통정보망의 무중단 운영 및 외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네트워크 운영 관련 정보 - 국토교통정보망 등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및 IP주소 할당현황 등 ○ 외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네트워크 운영 관련 정보 - 통신망 경로(IP대역), 주파수정보통신망 구성도, 정보보호시스템 현황,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	
운영지원과	항공보안관련	○ 국가 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- 항공보안 및 대테러 활동을 위한 국가 안보 우발계획 등의 의견조회 및 협의와 조정 등을 포함하는 정보임 - 항공보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, 보호구역 출입통제, 공항경비 등 항공보안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등 (항공보안 정보 중 국민공포용으로 제작 된 경우 공개) - 항공 화물보안 기준의 수립·운영과 관련하여 항공보안검색과 보안검색 위탁업체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임 - 각종 위해물품 검색 등을 위한 항공보안장비의 기준 및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임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3호	

담당부서	세부업무	비공개 해당 업무	관련근거	비고
운영지원과	대테러관련	○ 국가 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- 항공테러 관련 위기대응을 위한 실무 매뉴얼의 제 개정 등을 포함하는 정보임 - 테러대책(실무)협의회 기관 간 의결사항 및 회의결과에 관한 정보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	
운영지원과 항공관제과	대내외 행사	○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정보 -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등 국무 위원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 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	
항공관제과	군 관련 공역 설정 및 조정 항공교통관련업무	○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- 통제공역, 주의공역 설정시 군작전영향성에 대한 정보 - 주변국가와의 공역, 항공로 설정시 협상내용에 대한 정보 -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 및 규정 관리에 관한 정보 - 대외기관·외부 항공교통기관 간 합의서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정보 - 항공기 항적 및 항공교통 관제 녹음·녹화에 관한 정보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	
항공관제과	계기비행절차업무	○ 국가 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- 계기비행절차 도면 및 절차수립에 관한 정보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	
공통부서	비상·위기·재난관리 및 테러예방	○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- 비상·위기관리(테러 관련 등) 및 재난(풍수해 포함) 대응 매뉴얼 (비상, 위기, 재난시 행동요령 등 국민공포용으로 제작 된 경우 공개)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	
공통부서	제한구역 및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	○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정보 - 비행장, 공항, 항공무선표지소의 전기설비나 전자·통신시설, 전력수급시설, 보안검색이 완료된 지역, 관제시설, 화물청사 등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·구조·경비에 관한 정보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3호	
항공시설과	공항, 비행장 등 시설에 관한 사항	○ 국가 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- 공항, 비행장, 항공무선표지소 등 시설의 설계도·구조·경비 등에 관한 정보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	
안전운항과 항공관제과	보안사고 조사 및 처분	○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-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, 보안사고, 항공중사자의 행정 처분에 관한 사안(진행절차, 방법, 증거자료, 보고서, 관련 명단, 의견서 등) (*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, 보안사고 중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경우에는 공개)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	
공통부서	소송에 관련한 업무	○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,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- 진행 중인 재판관련 소장, 청구서, 답변서, 진행상황보고서, 대응방침, 증거자료, 준비서면, 법률자문 결과, 사실조회 결과, 조서 등 (*진행중인 재판은 적법하게 소장이 접수 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전까지를 의미함)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제6호	
운영지원과	소속 공무원의 근무평가 및 상훈에 관한 사항	○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추진되는 평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- 공무원의 근무평정 내용 - 공무원 상훈 결정을 위한 상훈심사위원회 명단 등 사전에 로비나 청탁 등이 들어갈 소지가 있는 정보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	
운영지원과	소속 공무원의 임용 시험·복무 등의 인사 업무	○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, 제도,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, 진단, 승인, 심사, 선정,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-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은행 관리, 시험 출제관리, 시험위원 위촉, 시험관리관 선정,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,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- 시험 원서,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, 학력, 주소 등 개인 정보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	

담당부서	세부업무	비공개 해당 업무	관련근거	비고
운영지원과	국유재산관련업무	○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- 토지수용재결(이의재결 등) 진행중인 업무에 대한 감정 평가 정보 - 타인의 토지수용재결(이의재결을 포함한다) 관련 정보(재결서·감정평가서 등) 및 공익사업관련 토지보상에 관한 정보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	
운영지원과	입찰·계약관련	○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, 제도,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, 진단, 승인, 심사, 선정,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-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, 지표, 방법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-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 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-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	
운영지원과 안전운항과	행정처분에 관한 사항	○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결정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청문, 심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- 당해 행정처분 등의 심의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공정성 저해 우려 등 심의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 등에 관한 정보 - 당해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- 행정처분이 확정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소송 진행 등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-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처분 대상자의 성명·주소 등 개인정보 및 처분내역 등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	
항공관제과	항공정보업무	○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- 항공정보 제공에 관한 대외기관 업무협조 사항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	
항공시설과	공항 및 비행장 시설 관리 업무	○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이나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. -공항 및 비행장 관리, 검사, 감독, 개발사업 관련 업무 및 내부검토 자료, 재난(항공기 사고처리는 제외) 및 재해관련 업무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	
항공시설과	항행안전시설에 관한 사항	○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이나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. - 전자·통신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운용, 장애보고처리, 정기하차 및 하차만료검사, 운용현황 및 심사분석, 연간 성능확인 점검 실적, 비행 점검 관련사항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	
항공시설과	공항 소음 업무	○ 소음대책지역 토지매수(농지) 업무 (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6호) -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, 소음영향도 조사, 소음측정 관련 내부검토 -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토지매수청구서, 부동산종합증명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토지 소유권자의 성함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수반되는 각종서류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	
공통부서	감독 및 지도점검	○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이나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. - 현장 불시 감독·지도점검 계획, 개선안 등 관련자료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	
공통부서	감사업무	○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정보 - 개인정보, 비위 사실을 포함하는 문답서, 확인서 등 감사 및 조사 활동 중 생산된 문서 - 처분요구서(업체명, 성명 등 개인정보 포함), 부패신고방 신고 및 처리 서류 등 공개 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있는 정보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	
공통부서	자문·평가위원회	○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정에 있는 사항 및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' - 위원 명단 및 회의록 일체 - 진행 중이거나,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(자문 위원 자문 내용) - 자문·평가위원 등의 개인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, 계좌번호, 주소, 연락처 등)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	

담당부서	세부업무	비공개 해당 업무	관련근거	비고
운영지원과	임용, 전출 등에 관한 업무	○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- 인사 교류 신청, 채용후보자 명부, 교육훈련 관리, 징계 심의, 의결, 결정통지, 신원조사, 퇴직 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, 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, 신용, 경제적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(다만,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)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	
운영지원과	복무 등에 관한 업무	○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-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, 집 전화번호, 학력, 주민등록번호,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. (다만,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)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	
운영지원과	보안업무	○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- 공항 내 출입·통제에 관한 사항-보호구역 출입증 발급내역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	
안전운항과	항공레저스포츠사업,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, 변경, 휴업, 폐업 신고 관한 사항, 항공레저스포츠 및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승인에 관한 사항	○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- 등록관련 서류(사업계획서, 업체의 내부정보, 핵심사업노하우 등) - 민원인(개인 및 업체)의 개인정보등 포함, 영업관련 사항(개인정보 등) 포함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	
항공시설과	지상안전사고 조사 및 처분	○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- 지상안전사고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사안으로 진행절차, 방법, 증거자료, 보고서, 관련 명단, 의견서 등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	
공통부서	민원업무	○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정보 - 진정, 탄원,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인 경우 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을 비공개 (다만,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 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)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	
안전운항과	항공기 감항증명, 수리개조승인 등 관련 인증 업무	○ 법인, 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. - 항공기 도입 및 송출로 인한 운영횟수 변경 및 개조로 인한 내부정보, 사업노하우 등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	
항공시설과	공항, 비행장 시설의 신설, 개량, 유지, 보수 등	○ 법인, 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. - 경영방침, 신용, 경리 등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	
공통부서	용역·공사 등의 업무 수행관련	○ 법인, 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. -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(개인·법인·단체 등)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·신공법·시공실적·내부관리 (기술자의 경력), 법인 등의 기술평가 결과, 계약등을 위하여 제안한 내용 등 (*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통계적인 형태로는 공개 가능)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	
항공시설과	공항 및 비행장 개발사업, 이착륙장 설치사업	○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- - 사업계획서, 검토결과서, 도면, 유치계획, 개발계획, 장애물 제한표면 등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	
항공시설과	장애물 제한표면 관리	○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- 공항 고도제한 및 항공장애물 관련 회의, 검토 자료 등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	
공통부서	개발계획관련 업무	○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- 국유재산활용 계획, 경비행장개발계획, 토지이용·도시개발·기반시설 개발계획 및 정보 등 (사업계획서, 검토결과서, 도면, 유치계획, 개발계획 등)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	